

[사 건 명] 행심 2017 - 3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7. 4월부터 주로 체육시간에 청구인이 ○○○○에게 매달려 물을 마시러 가거나, 피해학생 팔을 때리고 업히거나 의자를 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병신, ●발 등의 욕설 등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으며 피해학생 머리에 2~3회 꿀밤을 때리거나 영어 수업이 있는 날이면 자신의 책을 교실에 갖다 놓으라고 하였음
- 나. 2017. 7. 10. 학교폭력전담회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회부됨
- 다. 2017. 7.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5일,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조치 하였음
- 라. 2017. 7. 24. ~ 2017. 7. 28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조치사항 이수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안내절차 및 처분결과 통보가 미흡하여 제대로 재심절차에 대해 인지하기도 전에 청구인은 교내봉사 처분조치를 이행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만나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자처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출석정지 5일 처분은 과분하니 감경하여 주길 바란다.
- 다.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에 학부모의 적극적 노력, 학생의 반성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선도가능성에 대한 감경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무단결석 5일이 기록된다면 항공관련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고자 하는 청구인의 장래희망에 큰 걸림돌이 되니 처분을 감경하여 주길 바란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평소 학폭위 개최에 대해 지침에 따라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본 사안의 경우 방학 등을 앞두고 회의가 다소 촉박

하게 개최된 점 및 청구인 보호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등기 및 인편으로 학폭위 개최에 따른 참석요청서와 조치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의해 심의 결과 학급교체 처분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처음 내려지는 조치로 학급교체 처분은 과한 점, 수준별 수업 및 잦은 교실 이동 등의 교과교실제의 특성상 조치의 실효성이 낮은 점, 청구인 보호자의 적극적인 사안 대처 및 청구인에 대한 교육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5일로 조정하되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을 병과하여 처분조치 하였다.

다. 청구인과 함께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받은 관련학생의 경우 청구인보다 더 과중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성실히 징계를 이수하였으며 청구인의 경감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7년 4월부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에게 매

달려 물을 마시러 가거나, 피해학생 팔을 때리고 업히거나 의자를 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병신, ●발등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괴롭혀왔으며, 피해학생 머리에 2~3회 꿀밤을 때리거나, 영어수업이 있는 날이면 자신의 책을 교실에 갖다 놓으라고 시킨 사실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에게 매달려 물을 마시러 가거나, 피해학생 팔을 때리고 업히거나 의자를 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병신, ●발등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괴롭혀왔으며, 피해학생 머리에 2~3회 꿀밤을 때리거나, 영어수업이 있는 날이면 자신의 책을 교실에 갖다 놓으라고 시켰는바, 이러한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출석정지 5일 처분 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